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2**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개인적 법익 침해
- 사회적 법익 침해





##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14
제2장 명예훼손	27
제3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9
제4장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34
제5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35
제6장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37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39

# 제1장 사생활 침해

## 사례. 1

의결번호	제2019-202호
매 체 명	서울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12일 31면
기사제목	광주의 분노

### 1. 보도내용

「광주의 분노」 제하의 사진

서울경제

2019년 03월 12일  
31면 (사회)



**광주의 분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핑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가운데 사진). 이날 전씨가 32년 만에 광주를 방문하자 시민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그를 규탄했으며(왼쪽 사진) 법원 옆 동산초등학교 학생조차 창문 밖으로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쳤다.  
/광주=오. 기자

(17.8\*13.0)crr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을 향해 비난 구호를 외치는 초등학교생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19-214호
매 체 명	스포티비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6일 TV연예면
기사제목	[오늘의 연예]슈, 자숙하는줄 알았더니 한가로이 해외여행

1. 보도내용

「[오늘의 연예]슈, 자숙하는줄 알았더니 한가로이 해외여행」 제하의 사진



[스포티비뉴스=장 기자]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S.E.S.로 활동하며 '원조 요정'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슈 씨. 최근엔 8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가 알려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번 실수가 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 의사를 밝혔던 슈. 하지만 그녀가 다시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바로 지난 6일 슈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푸른 바다를 보며 한층 밝아진 모습의 슈 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요. 이 시기가 비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선고를 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외여행을 떠나고 사진까지 게재한 것은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 비난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해외 상습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가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미성년자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19-449호
매 체 명	인터넷 영남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3일 국제면
기사제목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1. 보도내용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제하의 사진

영남일보

2019년 05월 13일  
(국제면)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가운데)과 프랑스인 남성 2명이 11일 프랑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19-582호
매 체 명	뉴스시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0일 연예면
기사제목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최진실 딸

### 1. 보도내용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최진실 딸」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배우의 미성년자 자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의결번호	제2019-445호
매 체 명	광주타임즈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4일 1면
기사제목	○○군 공직자 이래도 되나

### 1. 보도내용

「제○회 ○○○○축제 때인 지난 3일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센터 ○○○○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 농촌지도사가 담당과장인 ○모과장에게 대들며 먹살을 잡는 일이 벌어져 축제장 주변에 있는 군민들의 눈총을 쬐푸리게 해 공직자 기강이 무너지고 근무태도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중략)

한편 ○씨는 본인의 병에 심각성을 모르고 인정도 않고 행동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해온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병가를 내서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다름을 벌인 공무원 양 당사자의 성, 소속, 직위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이 중 일방이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비록 공직기강해이를 지적한 기사라 할지라도 신원 및 정신과적 진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19-210호
매 체 명	인터넷 금강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22일 사회면
기사제목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1.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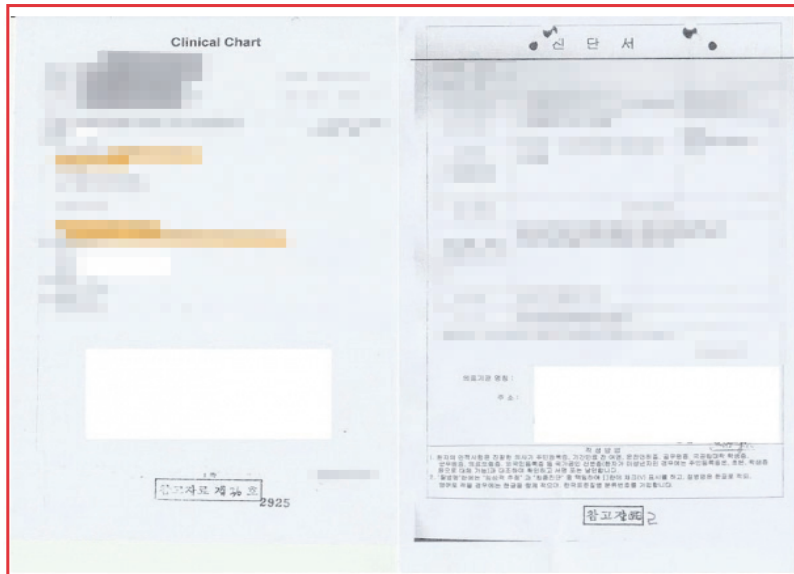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제하의 사진



HOME > 사회 > 사회일반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03.22 14:46 | 댓글 0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당 씨가 22일 SNS에 공개하며 허위진단서라고 주장한 김지은 씨의 진단서 2건.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재판 중인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 실물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산부인과 등 질병자료가 담긴 진단서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점, 해당 진단서 실물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7

의결번호	제2019-370호
매 체 명	뉴스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4월 10일
기사제목	물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

### 1. 보도내용

「물몬교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씨가 과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당시 동성애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물몬교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보수 성향의 종교로 불리운다. ○씨의 경우 물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중략)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은 “이들이 ○씨 자택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시 동성행각을 짐작하게 하는 진술도 일부 받아냈다”고 했다. (중략)

○씨의 동성애 사실도 그대로 문혔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동성애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동성행각’,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비록 유명인의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당사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장 명예훼손

### 사례. 8

의결번호	제2019-61호
매 체 명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월 18일
기사제목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 1. 보도내용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제하의 사진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the Leader' with the headline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Kim Hak-rae explains the relationship with Lee Seung-mi, 'What did I say 8 years ago..'). The article is dated 2019.01.18 12:31. Below the headline is a row of social media sharing icons. A photograph of Kim Hak-rae, a man in a dark suit, is shown at the bottom of the article snippet.

사진=뉴스1

김학래가 8년 전 남긴 이성미에 대한 해명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성 개그맨이 남성 가수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나 혼인하지 않고 미혼모로 생활하였고 이와 관련 남성 가수가 해명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남성 가수와 동명이인인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비록 동명이인에 대한 단순한 착각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과 함께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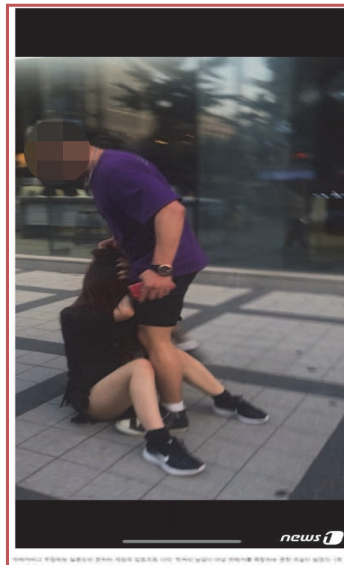
## 제3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사례. 9

의결번호	제2019-1017호
매 체 명	동아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8월 24일 사회면
기사제목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 1. 보도내용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피의자의 전신 모습을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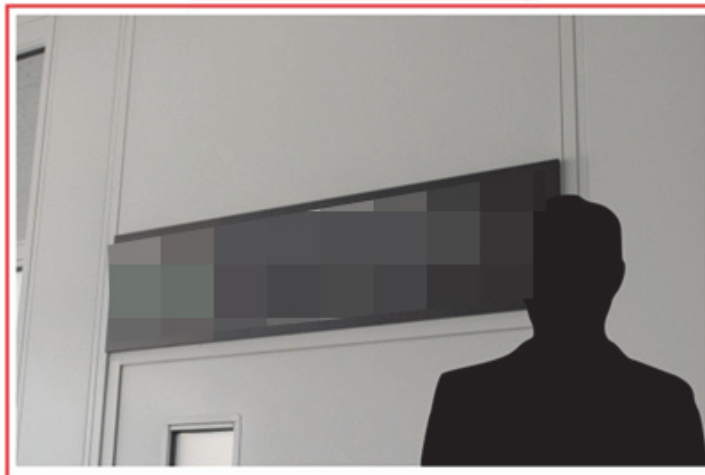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9-257호
매 체 명	인터넷 파주에서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2월 28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주)○○○○ ○팀장 구속

### 1. 보도내용

「(주)○○○○ ○팀장 구속」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주시 출자기관인 ‘(주)○○○○’ ○○○○팀 ○ 모(○○)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는 작년 결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월 15일 파주경찰서에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성, 나이, 소속 업체명,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9-797호
매 체 명	인터넷 중앙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7월 11일 사회면
기사제목	길고양이 때렸다가 직위해제 당한 고교 경비원

### 1. 보도내용

「길고양이 때렸다가 직위해제 당한 고교 경비원」의 제목

「아산 ○○○고, ○○세 당직 공무원 직위해제 (이하 생략)」의 부제목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길고양이를 때린 혐의로 고등학교 경비원이 직위해제 됐다.

11일 충남 아산의 ○○○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길고양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공무원 (경비업무) A씨(○○)를 지난 10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중략)

그중 직접 목격자 학생이 있었고 소문이 사실인 걸 알게 되자 고양이들을 도와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울었고, (중략) 경비해주시는 아저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꼬리를 잡고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중략)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학교 당국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소속 학교명, 직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4장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9-258호
매 체 명	인터넷 총남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18일 지역소식면
기사제목	천안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15년 구형

#### 1. 보도내용

「한 집에 살던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전 ○○당 천안○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A(40)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 동안 처제 B씨를 상대로 총 94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 중 5회는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강요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검찰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모 정당의 전(前)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소속 정당, 지역구, 직책, 나이 등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가해자와 인척(姻戚)관계인 성폭력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5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9-1051호
매 체 명	놀라운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8월 13일 REAL VIDEO면
기사제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 포착영상

### 1. 보도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 포착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 가해자의 범행과정을 영상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6장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9-1174호
매 체 명	놀라운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9월 23일 NEWS면
기사제목	지금 난리난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 1. 보도내용

「지금 난리난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소년법」 제62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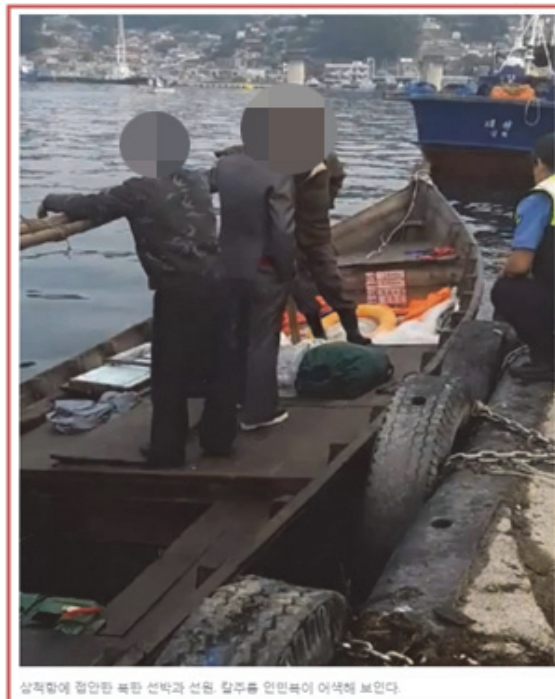
##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9-804호
매 체 명	인터넷 미래한국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7월 11일 국제·안보면
기사제목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 1. 보도내용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북한 목선 입항 경로와 목적 등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2019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사회적 법익 침해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42
제2장 차별 금지 위반	44
제3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47
제4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48
제5장 성관련 보도	52
제6장 자살관련 보도	54
제7장 마약·약물관련 보도	56
제8장 폭력 묘사	61
제9장 충격·혐오감	63
제10장 여론조사 보도	67
제11장 기사형 광고	69
제12장 기사 제목	71

# 제1장 보도 윤리 위반

##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9-97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월 23일 Issue면
기사제목	과거 대구참사·세월호·천안함 사건 조롱했던 '유티브'

### 1. 보도내용

「과거 대구참사·세월호·천안함 사건 조롱했던 '유티브」 제하의 사진



「그는 '풍동'이라는 아이디로 수십 건의 게시물을 작성해왔는데요. 천안함 실종자를 보고는 “내가 천안함에서 실종됐는데 나 때문에 ‘개그콘서트’ 안 한다고 했으면 죄책감에 자살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타요전철’이라는 말과 함께 요리사 몸에 대구 지하철 참사 범인의 얼굴이 합성된 요리사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그는 지난 2014년 게시물에서 “유가족에게 ‘하나님이 xx이를 너무 예뻐해서 데려간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물)맛이 변한 거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 4월 당시 “현시각 연속으로 올리면 고소당하는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가수 백청강, 그리고 물만두 사진입니다. (중략)

모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유튜버의 과거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해당 유튜버가 작성한 ‘세월호 사건’ 피해자를 물만두에 비유하고 중국 조선족 출신의 가수 사진을 조선족 토막살인범에 빗대어 게재한 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가해자의 초상을 요리사 사진과 합성한 글 등 조롱성 게시글을 다수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전달하는 것은 조롱성 게시글을 확산하여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2장 차별 금지 위반

###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9-98호
매 체 명	중부뉴스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월 25일 일일보도면
기사제목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

### 1. 보도내용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의 제목

「- 남성들 성폭력 두려워 여성접근 고민... 출산저하로 이어져

- 일부여성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 성폭력 걸리면 합의금 뜯어내는데 혈안

- 체육계 여성 선수들 성폭력 관계없는 여성들까지 오해불러... 여성 남편들까지 고민?

(중략)

늘어가는 것이 이에 버금가는 것이 있다면 남성을 유혹하여 성폭력으로 이어지면서 합의금을 노리고 있다.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건 무마용으로 합의금이 높아 해볼만하다는 얘기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음성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A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합의금만 무려 3억원을 날린 적도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음성 유행은 만18세 미성년일수록 합의금은 높아 로또 사는 것보다는 남성들을 유혹 성폭력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는 평이 나돌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남성과 알게 되면서 발생하는 H모 여성도 남성들 접촉 합의금 뜯어내는데 성공 취업은 부업이고 남성들 유혹 성폭력 합의금으로 혈안되고 있다.

또다른 미술학원에서 상습 성폭력사건 연루학생이 학원에 들어와서 학원장을 유혹 성폭력으로

고소하자 학원원장도 결백을 주장했지만 피해자측만 일방적으로 듣고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일부 직장들 사이에서는 남성들이 이러한 것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아예 여성과 접촉 자체를 리 두는가 하면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남성끼리, 여성끼리 회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도 성폭력 사건접수 전 해결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성폭력으로 수사 하여도 근거자료가 수사 레이다망에 없다면 마냥 성폭력으로 할개를 치고 있다.

사회 출발생에게 남녀 사랑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으며, 알아서 사귀게끔 만들어 놓다보니 여성이 남성과 첫 접촉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폭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이다.

이래서 로또보다 더 좋은 수입은 성폭력으로 남성들을 유도하며 합의금 뜯어내는 신종 수법을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피해없는 선수나, 결혼한 선수여성 남성에게 오해를 받을만한 일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중략)

저출산 저하 이래서 남성들이 여성 접근을 더 기피하고 있어 앞날 이어받는 미래 세대가 줄고 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의 접근을 기피해 출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는 일부의 예를 들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9-154호
매 체 명	인터넷 경남매일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2월 12일 핫뉴스면
기사제목	정유미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 “소문만 전했을 뿐인데”

### 1. 보도내용

「정유미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 “소문만 전했을 뿐인데”」의 제목 「(전략) 이에 대해 12일 정유미 소속사 측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나영석과 정유미의 불륜설을 최초 만든 이들이 모두 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5일 방송 작가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을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퍼트린 피의자 A 씨는 29살 여성 프리랜서 작가였다. 또한 A 씨의 메시지를 받아 가짜 뉴스 형식으로 수정해 회사 동료들에게 퍼트린 피의자 B 씨도 여성 회사원이었다. 방송가에 퍼진 소문들을 짜깁기해 동료작가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피의자 C 씨도 여성 방송 작가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유명 남성 프로듀서와 여성 배우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유포자가 모두 여성임을 부각하였다.

이는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성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3장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9-491호
매 체 명	e글로벌이코노믹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6일 사회면
기사제목	유승현(전 김포시의회 의장)풀스윙 강편치에 아내 사망... 김포시민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

#### 1. 보도내용

「유승현(전 김포시의회 의장)풀스윙 강편치에 아내 사망... 김포시민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제목

####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 살해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4장 범죄수법 상세묘사

###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9-379호
매 체 명	뉴픽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3월 20일 사회면
기사제목	‘일시 청력마비’로 군면제 꿈수 前국가대표 등 11명 덜미

### 1. 보도내용

「일시 청력마비’로 군면제 꿈수 前국가대표 등 11명 덜미」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이씨는 ○분 간격으로 ○회씩 ○○○○을 귀에 대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에서 ○시간가량 이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에서부터 시작해 ○○○○, ○○○○까지 순차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으려면 56데시벨 이상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완전 면제를 받으려면 71데시벨 이상”이라고 이들의 치밀한 수법을 공개  
했다.

병무청 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인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이 병역을 면제받고 나서 다시 청력이 돌아왔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을 상  
세히 묘사하고 청각 마비에 사용된 도구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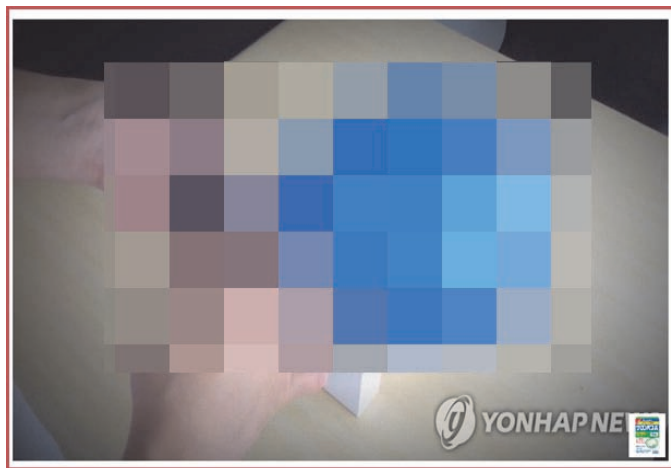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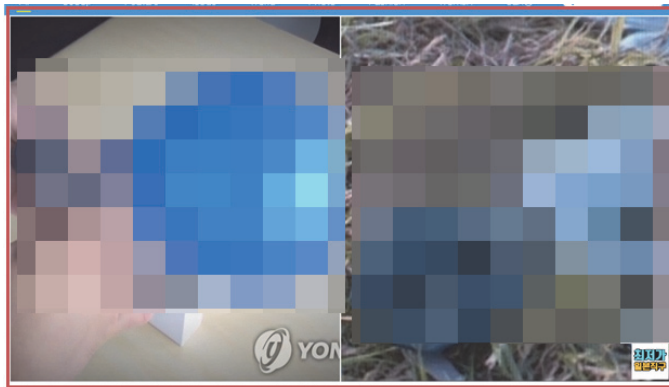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1

의결번호	제2019-502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17일 ALL면
기사제목	강남 일대 '0000' 유통 조직 적발...문자광고·배달서비스

1. 보도내용

「강남 일대 '0000' 유통 조직 적발...문자광고·배달서비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업자들, ○○용품 업체로 속여 ○○○○ 제조용으로 위장 구입」의 부제목

「(전략)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속여 ○○○○ 수입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뒤 약 25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김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광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 8g짜리 ○○ 100개당 ○원을 받고 구매자의 집이나 호텔 등 약속된 장소로 배달했다. (중략)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베트남에 놀러 갔다 클럽에서 ○○○○를 ○○ 형태로 흡입하는 것을 보고 돈을 벌 목적으로 지인들과 불법 유통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환각물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을 체포했다고 보도하면서 환각물질의 명칭, 제조 방법을 보여주는 사진,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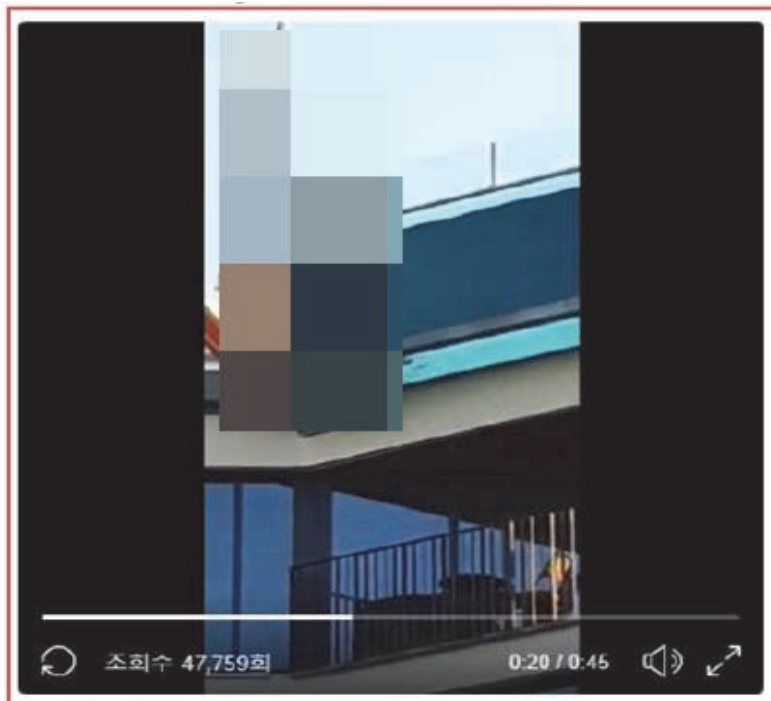
## 제5장 성관련 보도

### 사례. 22

의결번호	제2019-1177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9월 2일 월드컵
기사제목	대낮에 호텔 수영장에서 '성관계'하다 딱 걸린 커플 (영상)

### 1. 보도내용

「대낮에 호텔 수영장에서 '성관계'하다 딱 걸린 커플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수영장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6장 자살관련 보도

### 사례. 23

의결번호	제2019-700호
매 체 명	OM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일 정치·경제·사회면
기사제목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 앞두고 실종된 전 공무원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

#### 1. 보도내용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 앞두고 실종된 전 공무원 차량안에서 숨진 채 발견」의 제목 「충남 ○○문화재단 신입 사무국장 임용을 앞두고 실종됐던 전 ○○시 사무관 A(○○)씨가 1일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지난달 1일 퇴직한 A씨는 ○○문화재단 직원채용 면접전형(사무국장)에 합격해 28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의 나이, 소속, 직책, 모 지역 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용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24

의결번호	제2019-516호
매 체 명	세계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5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단독] 현직 여경, 상관 스트레스 탓에 극단 선택

### 1. 보도내용

「[단독] 현직 여경, 상관 스트레스 탓에 극단 선택」의 제목

「(전략) 경기 ○○○○경찰서는 9일 ○○파출소 소속 ○모(○○·여) 경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경장은 8일 오전 5시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동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현직 경찰이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성, 성별, 나이,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제목에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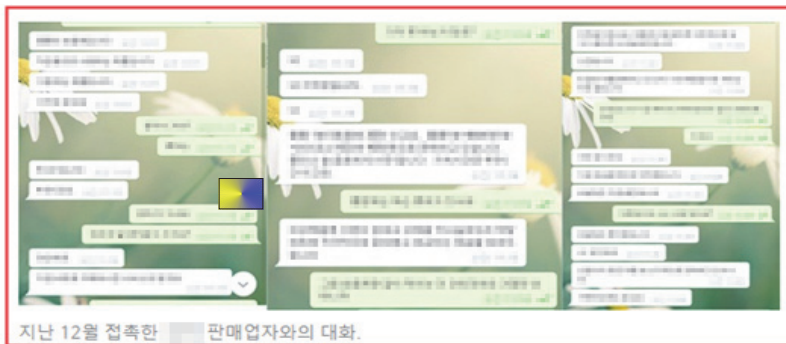
## 제7장 마약·약물관련 보도

### 사례. 25

의결번호	제2019-163호
매체명	일요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2월 8일 사회면
기사제목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

### 1. 보도내용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추가함

「(전략) 최근 버닝썬 사태로 강간약물 ○○○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흔히 ‘물에 타 먹는 ○○○’이라는 뜻의 ‘○○’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주 피해자가 여성이라 하여 ‘○○○○’ 혹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부르기도 한다.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인 ○○○의 효과는 복용 10~20분 이내로 발생한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를 술과 함께 복용하면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다가 의식을 잃는다. 이런 상태는 ○시간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색과 향이 없어 술이나 음료에 섞어도 티가 나지 않고 무엇보다 약 성분이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판매업자는 ○○○를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절하게 만들어 기억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개 넣으면 기절 시간이 더 기냐’고 묻자 “당연하다. 지금 세트로 구매하면 서비스도 많다”며 기자를 회유하기도 했다. 가격은 1병 당 ○ 원. 그는 ○ 원만 더 내면 흥분제 1병과 발기부전치료제인 아이코스 10정까지 주겠다고 패키지 구매를 권유했다.

흥분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여성이 복용하면 기분이 업되고 성욕이 매우 높아져 악발에 취해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애교 떠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기자가 접촉한 판매업자들 대부분은 “○○과 함께 쓸 수 있는 또 다른 마약을 구입하라”고 부추겼다. 앞서 접촉했던 SNS 판매업자 역시 “○○○만으로 부족하면 수면제를 쓰라”며 “원한다면 수면제나 ○○○ 등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은 환각의 강도가 ○○○나 ○○○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드러내놓고 마약류를 파는 웹사이트도 있다. 한 성기능개선제품 판매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의약품보조제를 판매하는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별한정 제품’ 코너에는 강력최음제와 환각제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실시간 상담사는 강력 최음제를 추천했다. 효과에 대한 답은 3분 만에 도착했다. 그는 “○○분 정도 지나면 여성호르몬이 강력히 분비되면서 붕붕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고 최고로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그만 자극이라도 주면 남자분이 하자는 대로 100% 따라오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품은 돼지흥분제로 알려진 ○○○보다 3배 더 강력하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술에 넣으면 작업률 100%”라고 자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중 제품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구매 과정은 허술했다. 그는 구매자에게 실명인증이나 성인인증도 요구하지 않았다. 컴퓨터와 돈만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해당 마약을 사용한 성폭행 등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6

의결번호	제2019-71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2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비아이 투여 의혹’ 일어난 마약 ‘○○○’를 복용한 여성이 그린 자화상 변화

1. 보도내용

「‘비아이 투여 의혹’ 일어난 마약 ‘○○○’를 복용한 여성이 그린 자화상 변화」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실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비아이는 A 씨에게 “○(○○○,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은 어떻게 하는 거임?” 등 마약과 관련해 수차례 물으며 ○○○를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략)

초강력 환각제 일종인 ○○○는 자그마치 ○○○의 1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때 예술가 친구는 마약 일종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환각제 ○○○를 Omg 복용한 후 거울을 보며 총 9시간 동안 11장의 자화상을 그렸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사용량,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8장 폭력 묘사

### 사례. 27

의결번호	제2019-728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27일 국제면
기사제목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中 발각 뒤집은 CCTV 장면 (영상)

### 1. 보도내용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中 발각 뒤집은 CCTV 장면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전략)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다가 여성을 일으켜 앉히고선 발로 강하게 머리와 배 등을 구타한다. 이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의 뒤로 가 치마를 벗기려다 잘되지 않자 옷을 찢는 모습도 보인다. 이내 남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끌고 간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피해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문지마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고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9장 충격·혐오감

### 사례. 28

의결번호	제2019-39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18년 12월 24일 월드컵
기사제목	자신의 발 절단해 친구들과 인육 고기 해먹은 남성

### 1. 보도내용

「자신의 발 절단해 친구들과 인육 고기 해먹은 남성」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추가함

「자신의 잘린 발 인육을 자신의 친구들과 요리해 먹은 남성이 있습니다. (중략)

A씨는 이때 황당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잘라낼 것이라면, 내가 먹는 건 어떨까?”라고요. (중략)

그는 자신의 다리 일부를 타코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1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육 타코 데이”를 제안했는데요. (중략)

타코의 재료가 된 인육은 밤새 양념된 뒤, 후추와 소금, 라임 소스로 볶아졌습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외국에서 한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절단한 자신의 다리를 요리해 먹은 내용과 요리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절단된 다리 사진, 상자에 담긴 절단된 다리를 모자이크한 사진, 이를 요리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9

의결번호	제2019-412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4월 20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자신 꾸중 듣고 다리 아래로 '투신해' 목숨 끊은 아들 보고 좌절한 엄마

1. 보도내용

「자신 꾸중 듣고 다리 아래로 '투신해' 목숨 끊은 아들 보고 좌절한 엄마」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 자살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투신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10장 여론조사 보도

### 사례. 30

의결번호	제2019-1191호
매 체 명	조선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9월 6일 대학입시면
기사제목	정시 놓고 또 쪼개진 교육계

### 1. 보도내용

「(전략) 각종 조사에서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다. 이날 공개된 대입 제도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63.2%)이 ‘수시가 바람직하다’(22.5%)는 응답의 3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한 입시 전문 교육기업이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 3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44%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 요소라고 응답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11장 기사형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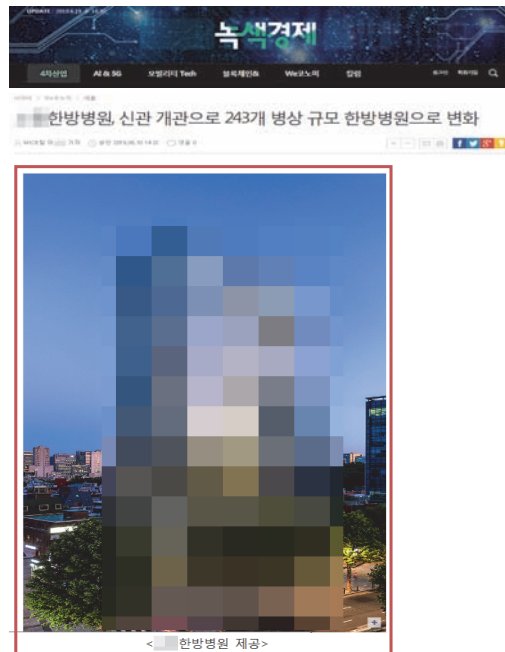
## 사례. 31

의결번호	제2019-747호
매 체 명	녹색경제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6월 10일 We코노미면
기사제목	○○한방병원, 신관 개관으로 243개 병상 규모 한방병원으로 변화

### 1. 보도내용

「이○○ 기자」

「○○한방병원, 신관 개관으로 243개 병상 규모 한방병원으로 변화」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한방과 양방 협진을 통해 1명의 환자에게 6명의 전문의료진이 배정되는 1:6 팀닥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병원(병원장 ○○)이 6월 10일 ○○○○역 본관 인근에 143개 병상 규모의 신관을 개관해 총 243개 병상 규모의 한방병원으로 변화한다.

신관은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로서 1층에는 환자와 가족, 내원객들을 위한 라운지와 카페, 도서관이 위치하며, 2층은 FDA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BSD-2000 고주파 기기를 포함, 총 8대의 고주파 치료장비가 갖춰진 고주파온열암치료센터가 운영된다. (중략)

병원 관계자는 “신관 개관은 최적의 치료공간 조성을 목표로 환자 중심의 편의시설과 설계를 적용했다. 면역력이 떨어져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 각 층마다 독일 공기청정기 ‘나노드론’ 및 지르벤 에어컨트롤워셔를 설치해 초미세입자까지 정화 가능한 실내정화시스템을 운영한다. 내부 마감재는 천연 자재로 만들어져 안전성을 높였고, 환자복 또한 천연섬유로 오랜 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베개, 이불, 매트리스 커버 등은 헝가리 구스로 맞춤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전경 사진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12장 기사 제목

### 사례. 32

의결번호	제2019-1243호
매 체 명	헤럴드POP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0월 18일 화제면
기사제목	유승준 부친 총격고백 “아들 강간범..17년동안”

### 1. 보도내용

「유승준 부친 총격고백 “아들 강간범..17년동안”」의 제목

「(전략) 유승준의 아버지 유○○ 씨는 “나는 아들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보내려고 했다. 아들이 군대에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그런 아들의 시민권 취득은 내가 권유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중략)

또 그는 “내가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 국적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어떨겠나. 그게 17년이다. 애가 무슨 테러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며 오열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수 유승준 부친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편집하여 유승준의 부친이 마치 유승준이 강간범으로 비취질 수 있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왜곡

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